

의안번호 제96호

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7. 11. 17.

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96호

제출연월일: 2017. 11. 17. 제 출 자: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, 진로체험 등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통합운영 하고자「민법」제32조에 의거 설립하는 「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」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설립목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 함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나.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 명시 함(안 제4조)
- 다. 정관, 임원, 이사회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)
- 라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함(안 제10조)
- 마.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함(안 제11조)
- 바.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, 사업연도, 사업계획, 결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함(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)
- 사. 감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함(안 제15조까지)
- 아.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함(안 제16조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2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- 3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- 가) 예고기간 : 2017년 9월 18일 ~ 10월 13일(25일)
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
- 가) 혁신담당관 ☎ 041-635-3196 (출연기관 설립협의)
- 나) 여성가족정책관 🏗 041-635-4994 (비영리법인 허가)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진흥하고 청소년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하는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립) ①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,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3조(사업)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청소년 체험 · 수련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 운영 및 진흥사업
 - 2.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축제·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
 - 3. 청소년을 위한 복지·보호·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- 4. 청소년 진로체험 및 학교연계사업
 - 5.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포상
 - 6. 청소년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
 - 7.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논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
 - 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관련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.
- 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논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는 「지방재정법」제

17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29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제5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사무소의 소재지
- 4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5. 이사의 임기와 임면(任免)에 관한 사항
-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7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- 8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- 9. 사업에 관한 사항
- 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11. 해산 및 남은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
- 12.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
- 13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재단은 정관 및 직제·보수·인사·감사 관련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6조(임원 등) ① 재단에는 이사장·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
 -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 -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- 제7조(이사회)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 -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-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- 제8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제9조(비밀준수)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0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1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수 없다.
- 제12조(재단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청소년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

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, 물품 관리 전화 등을 할 수 있다.

- 제13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- 제14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5조(감사 및 보고)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,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 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·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16조(공무원의 파견)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 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7조(운영규정)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- 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į	관	부	,	서	성		명
입	평	생	亚	육	과	김	정	숙
ㅂ 안	청	소	년	팀	장	정	경	옥
자	담		당		자	김 (74	영 : 6 - 5 7	덕 83)

[별표]

청소년관련 시설의 명칭 및 위치

명 칭	위 치
논산시청소년수련관	논산시 논산대로 424(지산동)
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논산시 논산대로 424(지산동) 청소년수련관 내

불 임 비용추계서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 - ◎ 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)
- 2. 비용추계결과 (재단설립에 따른 증가분)
 - 가, 추계의 전제
 - ◎ 재단 자본금, 재단운영비 등
 - 나. 2018년도 추계결과 : 150.000.000원
 - ◎ 재단 출연금
 - 자본금 50,000천원 × 1회 = 50,000,000원
 - ◎ 재단운영비 등
 - 사무국장 인건비 49,800천원×1명 = 49,800,000원 ※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준용 (상한액 66,274 / 하한액 33,390)
 - 제경비(출장여비, 퇴직적립, 4대보험 등) 13,700천원×1식 = 13,700,000원
 - 재단 행정·회계시스템 구축 22.500천원×1식 = 22.500,000원
 - 일반운영비 등 1.400천원×10개월 = 14.000.000원
 - ※ 2018년도 사무국장 채용 후 재단 기능정비 및 시스템 구축 추진
 - 다. 2019년도 이후 추계결과 : 240,000,000원
 - ◎ 재단 운영비 등
 - 대표이사(상임) 인건비 59.490천원×1명 = 59.490.000원 ※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임기제공무원 5급상당 준용 (상한액 75,862 / 하한액 43,118)
 - 사무국장 인건비 49,800천원×1명 = 49,800,000원
 - 사무국 직원 인건비 29.500천원×2명 = 59.000.000원
 - ※ 행정·예산직원 1명(32,000천원), 시설관리운영 1명(27,000천원)
 - 전문인력 처우개선(기존 지도사·상담사) 25,000천원×1식 = 25,000,000원
 - 제경비(출장여비, 퇴직적립, 4대보험 등) 46,710천원×1식 = 46,710,000원
 - ※ 2019년도 대표이사, 사무국직원 채용

3. 現, 청소년기관 운영예산 : 1,106,014,000원(2018년도 본예산 입력기준)

◎ 청소년수련관 운영

예산내역	예산액(천원)	비 고
계	754,494	
인 건 비	331,054	종사자 10명(청소년지도사 9명, 조리사1명)
사무관리비	160,340	일반수용비, 셔틀버스·청소용역비
공공운영비	67,100	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
시 설 비	180,000	방수공사 등 시설정비 사업비
자산취득비	16,000	강의실 집기 등 구입

◎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

예산내역	예산액(천원)	비고
계	351,520	
인 건 비	331,520	종사자 8명(청소년상담사 8명)
사무관리비	10,500	일반수용비
공공운영비	9,500	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

4. 작성자

평생교육과장 김정숙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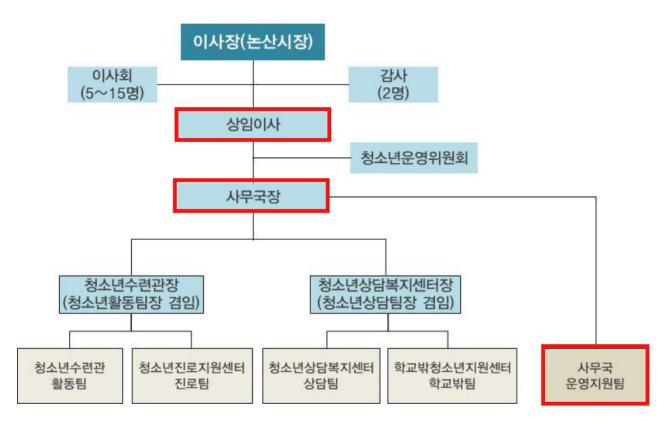
=	구 분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	계
세	입	150,000	240,000	240,000	240,000	240,000	1,110,000
7	국 비						0
7	기 급						0
Ţ	돈 비						0
٦	() H)	150,000	240,000	240,000	240,000	240,000	1,110,000
세	출	150,000	240,000	240,000	240,000	240,000	1,110,000
◎ 자본	미	50,000					50,000
◎ 재단	운영 등	100,000	240,000	240,000	240,000	240,000	1,060,000
재	원 조달	150,000	240,000	240,000	240,000	240,000	1,110,000
ما ح	소 계						0
의존 재원	보조금						0
/개건 	지방교부세						
	소 계	150,000	240,000	240,000	240,000	240,000	1,110,000
자체	지방세	150,000	240,000	240,000	240,000	240,000	1,110,000
수입	세외수입						
	공모사업						0
,	지방채						
7	기 급						
공기약	법 특별회계						
기 (채무투	타 "담, 민자 등)						

[※] 재단설립에 따른 추가 예산추계

참고 1

청소년행복재단 조직구성(안)

1 조직구성(안)



※ 2018년 : 사무국장 채용 / 2019년 : 대표(상임)이사, 사무국 직원 2명 채용

2 인력(안)

구 분	계	대표(상임) 이사	사무 국장	관장 센터장	청소년 활동팀	청소년 진로팀	청소년 상담팀	학교밖 지원팀	운영 지원팀	비고
현 재	22			2′	10		8		2'	
법 인	23	1	1		9	3	4	3	2(2*)	
증·감	1	+1	+1	-2	-1	+3	-4	+3		

◎ 파견 공무원 2명*, 현재인원 중 겸임 공무원 4명'

※ 조직 및 인력산출:「청소년행복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」준용(충남연구원 수행)

참고 2 논산시 청소년관련 시설현황

□ 청소년수련관 현황

1 기관현황

O 시 설 명 : 논산시청소년수련관

O 위 치: 논산시 논산대로 424(지산동)

O 개 관 일: 2000. 5. 9

O 설립근거 :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(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O 건립비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계	국 비	도 비	시 비	비고
합계	4,204	2,280	660	1,264	
시설건립비	3,904	2,280	660	964	
부지매입비	300	-	-	300	

O 주요연혁

- 1998. 02. 16 : 청소년수련시설 허가

- 1998. 03. 06 : 착 공

- 1999. 10. 20 : 청소년수련시설 등록

- 1999. 11. 01 : 준 공

- 2000. 04. 20 : 학교법인 성령학원(한민대) 위탁체결

- 2000. 05. 09 : 청소년수련관 개관식 및 청소년음악회 개최

- 2002. 12. 31 : 학교법인 성령학원(한민대) 위탁종료

- 2003. 01. 01 : 학교법인 건양학원(건양대) 위탁체결

- 2006. 03. 01 :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시

- 2008. 12. 31 : 학교법인 건양학원(건양대) 위탁종료

- 2009. 01. 01 : 논산시 직영 개시

- 2014. 09. 29 : 청소년활동 유공기관 표창(충청남도지사)

- 2016. 11. 19 : 충청남도 청소년참여대회 우수(충청남도교육감)

※ 2013~16년, 4년 연속 방과후아카데미 우수기관 선정(여성가족부)

2 시설현황

O 시설규모 : 부지 4,958m², 건축면적 3,995m²(지하1층, 지상3층)

O 주요시설

층별 면적(m²)		면적(m²)	주요시설	비고
계		3,995.55		
지 하 (문화존)		1,632	인터넷부스, 노래방, 댄스실, 당구장, 탁구대, 작은도서관, 전기·기계실	494평
	1층	989.44	수련관사무실, 상담복지센터, 회의실, 실내체육관(150평), 집단상담실	299평
지상	2층	492.64	교육강의실, 방과후교실(4,5,6학년)	149평
	3층	881.47	청소년극장(73평,147석), 강당(82평)	266평

3 운영현황

O 운영인력

구분	계	운영대표	팀 장	청소년 지도사	방과후 아카데미	조리원	비고
정 원	11명	1	1	5	3	1	
현 원	11명	1	1	5	3	1	

※ 운영대표 : 청소년팀 담당공무원 겸임(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대표 자격 보유)

O 연도별 이용현황

연도별 누 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비고
376,778명	44,526명	79,124명	88,978명	84,058명	80,092명	

⇒ 2014년 이후 감소요인 :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시 성인대상 프로그램 및 이용 지양에 따른 **성인이용자 수 감소**

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

1 기관현황

O 시 설 명 :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

O 위 치 : 논산시 논산대로 424(지산동) 1층

O 설립일: 1994. 5. 14

O 설립근거: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

O 주요연혁

- 1994. 05. 14 : 개 소(논산시청소년상담실 운영위원회 위탁)

- 2002. 11. 20 : 우수 청소년상담실 선정 표창(문화관광부장관)

- 2011. 01. 01 : 논산시 직영 개시

- 2011. 07. 01 : 논산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사업개시

- 2014. 02. 03 : 학교 박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사업개시

- 2014. 08. 30 :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 20주년 기념행사 및

제1회 논산시 청소년 진로·직업박람회 개최

- 2015. 08. 22 : 제2회 논산시 청소년 진로·직업박람회 개최

- 2016. 11. 25 :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우수기관 표창(여성가족부장관)

- 2017. 6. 1 ~ 2 : 제4회 논산시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(9,000여명 참석)

2 운영현황

O 운영인력

구분	계	센터장	팀 장	상담지원	통합지원	학교밖 지원	비고
정 원	9명	1	1	2	2	3	
현 원	9명	1	1	2	2	3	

※ 센터장 : 평생교육과장 겸임

O 연도별 상담실적 및 이용현황

연도별 누 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비고
374,137명	69,643명	63,244명	69,249명	74,647명	97,354명	

참고 3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민법」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또는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 - 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사무국장 인건비 49,800천원×1명 = 49,800,000원
 -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 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1. 설립 목적

- 2. 주요 업무와 사업
- 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- 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- 제25조(지도·감독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.
 - 1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
 - 2.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- ②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1.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
 - 2.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,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□「지방재정법」

-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-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 - 4. 보조금을 지출하니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- 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- 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제29조(기부·보조의 제한) ① 삭제(2011.9.6)

-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모든 재정지출로 한다.
-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"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"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- ④ 삭제(2011.9.6)
-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 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.

□「지방공무원법」

제30조의4(파견근무)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,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공공단체, 「공공기

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(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), 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,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수 있으며,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□ 「청소년기본법」

- 제26조 (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)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.
- 제29조(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 위에서 그 운영·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- ③ 개인・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- 제30조(수익사업) 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 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□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

- 제5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 을 받아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·청소년활동프로그램·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참고 4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

기관명	제 정 내 용	제정일자	비고	
경기도 성남시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2007.08.06	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	
경기도 과천시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(이하"재 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2010.12.30	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	
경상남도 사천시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행복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·예술·교육·체육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련하고 청소년들의 상담, 보호·지원, 긴급구조,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2007.04.30	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	
충청남도 예산군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산군 청소년 복지의 전 문성을 증진하고 내실있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2013.04.01	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	
충청남도 홍성군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행복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, 예술, 교육, 체육활동 등의 수련거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「민법」제32조에 이거 설립하는 "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(이하"수련관"이라 한다)의 운영과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2001.10.15	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조례	

참고 5 타 시·군 법인설립 현황

시군	재단명칭	설립 연도	운영시설	출연금 (단위:억원)	인력	비고
충청 남도	(재)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	2008	청소년활동진홍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(2)	자본:3 예산:40	37(63)	
서산시	(재)서산시 복지재단	2011	수련관, 상담센터, 역성,어린이회관, 자원봉사센터	자본:2 예산:14.7	46	
홍성군	(재)홍성군 청소년수련관	2002	수련관, 상담센터, 문화의집	자본:3 예산:10	19	
예산군	(재)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	2013	수련관, 상담센터, 문화의집	자본:3 예산:12.8	21	
수원시	(재)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	2009	문화센터,수련관2 문화의집2 상담복지센1 미디어센터1 진로체험센터1	자본:27.5 출연:75 자체:30	정:98 현:92	
성남시	(재)성남시 청소년재단	2008	수련관5, 문화의집2 상담복자센터 1	자본:0.5 출연:172 자체:70	정:192 현:182	
고양시	(재)고양시 청소년재단	2016	수련관2,문화의집2 상담복지센터1, 진로센터1	자본:0.5 출연:43	10	
안양시	(재)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	1999	수련관2, 쉼터1 문화의집3, 상담복지센터1	자본:0.1 출연:39 자체:30 보조:8.8	정:68 현:66	
용인시	(재)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	2009	수련원1, 수련관1, 문화의집3 상담복지센터1	자본:0.5 출연:35 자체:45 보조:6	정:88 현:66	
평택시	(재)평택시 청소년재단	2000	수련원1, 문화센터1 문화의집5, 쉼터1 상담복지센터 1	자본:0.1 출연:20 자체:4.2 보조:27	정:49 현:28	
김포시	(재)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	2010	청소년수련관1 수련원1 문화의집3 상담복지센터1	자본:0.5 출연:54 자체:3	정:57 현:49	
광명시	(재)광명시 인재육성재단	2014	수련관1 진로직업체험센터1 문화의집3	자본:18 출연:26	정:54 현:33	
구리시	(재)구리시 청소년수련관	2003	수련관1 상담복지센터1 자원봉사센터1	자본:0 출연:4 자체:33	정:51 현:49	
이천시	(재)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	2016	수련관1 문화의집3 상담복지센터1	자본:0.3 출연:23	정:37	
의정부시	(재)의정부시 청소년재단	2015	수련관 1 상담복지센터 1 문화의집 1	미정	미정	
화성시	(재)화성시 여성・청소년재단	설립 중	미정	미정	미정	
의왕시	(재)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	2017	수련관1 상담복지센터1	자본:3 출연:	33	
안산시	(재)안산시 인재육성재단	2014	없음	자본:3 출연:11	정:4 현:4	-